

##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실천원리 탐색

### - 성경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

김재민\*\*

#### 논문초록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원리들과 실천원리들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자 보호는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개발되고 법률·제도 또한 정비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보장규정과 같은 일반원리에 담긴 기본정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자에게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임에도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법적, 공동체 윤리적 보호책임이 없는 자임에도 초기대응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본질은 '이웃사랑'이다. 이 이웃사랑의 법률적 표현이 바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이것이 바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반원리인 것이다. 이를 기초로 다양한 실천원리 등을 추출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바, 피해자에 대한 공감교육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태세의 확립, 범죄피해자의 기초적 생존확보를 위한 물질적 지원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정책제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일반원리, 실천원리, 이웃사랑, 피해자 보호정책

---

\* 이 논문은 2016년 5월 28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발표문 “성경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사상, -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를 수정하여 투고한 것으로서 경일대학교 교내 일반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016년 6월 17일 접수, 7월 6일 최종수정, 7월 12일 게재확정

## 1. 들어가는 말

범죄피해자<sup>1)</sup> 보호정책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범죄피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은 필연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문제와 직결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우리 헌법 규정들로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등과 같은 일반적 기본권 규정도 있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헌법 제30조)’ 및 ‘법정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권리 규정도 존재한다. 이 중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는 범죄피해자가 향유해야 할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헌법 제10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핵심철학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보편원리이자 일반원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원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가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유용한 정책으로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천원리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정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구체화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의 실천원리 적용은 같은 맥락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기독교의 대계명 중의 하나인 ‘이웃사랑’이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일반

- 
- 1)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2779호)’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동법 제3조)”를 의미한다고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만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다(동법 제223조, 제225조).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면 피해자 개념을 넓게 확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에 실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당한 자로서 좁은 의미의 범죄피해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사법기관의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며(헌재 1992.10.1. 91헌마31),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의 목표(성낙인, 2015: 995)라고 보고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누가복음 10:25-37)를 통해<sup>3)</sup> 그 일반원리 실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이 비유 속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응방식에 대한 법적·도덕적 평가 및 개인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Marshall, 2013: 242), 비유 속 각 행위주체들이 보여 준 대응행태를 범죄피해자 보호적 시각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이웃사랑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일반원리에 접맥되고 있음을 논증한 뒤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대한 실천원리를 추출하여 이 원리에 충실히 부응하는 몇 가지 피해자 보호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II.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원리에 관한 담론

### 1. 일반원리 정립을 위한 노력

#### (1) 국제사회의 동향

1950년대 이전까지 범죄행위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해행위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에 대한 해악이라고 보아 피해자 문제를 소홀히 다뤄오다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 피해자 권리보호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시적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UN과 EU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시하게 된 사실이다. 즉, 1985년 UN이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사법정의를 위한 기본원칙 선언(이하 ‘기본원칙 선언’이라 한다)’을 제정한 것,<sup>4)</sup> 유럽연합에서 소속된 국가들이

3)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폭행을 당한 후 길가에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층 인사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유대인에게 천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동정심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그 요지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참 이웃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제시한 예수님의 비유이다.

4) 원 명칭은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다([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cooperation\\_in\\_criminal\\_matters/jl0027\\_en.htm](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cooperation_in_criminal_matters/jl0027_en.htm), 검색일 2016. 6. 15). 이 기본원칙 선언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범죄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2001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중추적 결정(이하 ‘중추적 결정’이라 한다)’<sup>5)</sup>과 2012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유럽 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지침(이하 ‘유럽 피해자 보호 지침’이라 한다)’<sup>6)</sup>을 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지침에 불과할 뿐 회원국들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UN의 ‘기본원칙 선언’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각국 피해자 정책수립에 있어서 일반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EU의 ‘중추적 결정’과는 달리 2012년에 제시된 ‘유럽 피해자 보호 지침’에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2015년 12월 까지 이 지침에 상응하도록 자국의 법률과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 위원회에 알리도록 의무 지움으로써 실질적인 일반원리로 작용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UN과 EU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일반원리를 제시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령 제정,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개발, 피해자 보호정책의 효과적 집행 등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국적 민간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피해자문제에 적절

---

과 존중감을 가진 응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 ‘피해자의 사적 비밀과 신변안전 확보’, ‘가해자로부터의 물질적 배상금 지급 및 국가로부터의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입안을 위한 일반원리 들을 제시하고 있다.

5) 원 명칭은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이다([http://eur-lex.europa.eu/search.html?lang=en&text=Council+Framework+Decision+of+15+March+2001&qid=1466053001506&type=quick&AU\\_CODED=CONSIL&scope=EURLEX&DD\\_YEAR=2001](http://eur-lex.europa.eu/search.html?lang=en&text=Council+Framework+Decision+of+15+March+2001&qid=1466053001506&type=quick&AU_CODED=CONSIL&scope=EURLEX&DD_YEAR=2001), 검색일 2016.6.15)

6) 원 명칭은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이다(<http://eur-lex.europa.eu/search.html?qid=1466051805306&text=victims%20in%20criminal%20proceedings&scope=EURLEX&type=quick&lang=en>. (검색일 2016.6.15). 이 ‘유럽 피해자 보호 지침’에서는 ‘피해자가 [상황을] 이해할 권리 및 피해자로 이해되어질 권리’, ‘초기대응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자기 사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권리’,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피해자 보호법령을 입안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반원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Groenhuijsen, 2014.6).

7) [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검색일 2016.6.14).

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sup>8)</sup>

## (2) 우리나라의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조항을 됴으로써 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였다. 이후 이러한 일반원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피해자보호정책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1987년 헌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과 피해자 법정진술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sup>9)</sup> 뒤이어 1997년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적 시스템이 구축되고, 2004년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공식기구 설치,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반 특별법들의 피해자 보호관련 규정 개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일반원리가 구체적 실천원리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사건을 다루는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대응 미숙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폭력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그러한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sup>11)</sup>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틀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근본원리

8) 영국 내무성의 ‘범죄피해보상위원회(CICB), 미국 법무성의 ‘범죄피해자 대책실(OVC)’처럼 각 나라들은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각의 정부기구를 갖추고 피해자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결성된 전국적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는 미국의 NOVA(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ociation), 영국의 VS(Victim Support), 독일의 Weisser Ring, 일본의 NAVS(범죄피해자유가족 전국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9) 우리 헌법은 피해자 보호정책의 일반원리를 규정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정책들을 헌법규범으로 포섭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0) 예를 들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권’,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보장,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피해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 (검색일 2016.2.12.) 헤럴드 경제뉴스 2015.7.16.자. “피해자 인권은 없다.”

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피해자보호의 핵심철학을 담은 일반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정성껏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 보호의 본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피해유형별 실천원리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일반원리가 다양한 피해자화 양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에 해당한다면 실천원리는 각각의 피해자화 양상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구체적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비유에 나타난 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기 전에 피해 양상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종래 어떠한 보호정책이나 실천원리들이 거론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육체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

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들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게 된다. 살인·강도·강간·공갈·협박·폭행 등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들이다. 이런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게 되거나 불구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사건발생 초기에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육체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의 실천원리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와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처가 될 것이다.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속한 구급활동, 예고된 공격을 차단하고 추가적 공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철저한 신변안전 확보, 육체적 피해회복을 위한 물질적 지원, 부상당한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트라우마를 상쇄시키기 위한 적절한 심리적 위기개입 등은 그러한 실천원리 속에서 파생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

대개 강력범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삶의 위기상황이 초래된다. 그것은 인간의 평온한 자아 개념

에 대한 침해로서 공포감, 분노, 우울증, 무력감, 수치심, 자괴감, 불신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수반한다(Kirchhoff, 2005: 58). 정신적 고통이 다른 고통영역에 비하여 더욱 심각할 여지가 있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달리 정신적 고통의 영역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대응이 쉽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는 신속한 심리적 위기개입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무력감에서 해방되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당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응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원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한 자세로 인내와 이해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적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의 구체적 보호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3)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사회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편견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회적 존속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인간관계망에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는 피해자 대응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에 관한 규정의 이념을 보다 구체화한 원리들로서 사회적 편견의 교정, 인권감수성 배양, 공동체의식의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실천원리를 피해자 보호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예를 든다면 반인권적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범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적 따돌림을 인격에 대한 모독이자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범죄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일원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노력 등이 있을 것이다.

### (4)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

범죄피해를 당한 자들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

로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이다. 범죄로 인해 신체손상을 입게 되면 치료비가 들게 되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임금손실이 발생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비용 부담이 증가된다. 이렇듯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가정 구성원의 기초적 생존이 위협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원리와 제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실천원리는 피해자의 기초적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의 확보가 될 것이다. 이 원리를 구체화 시킨 정책들로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과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제도, 배상명령 제도, 형사화해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 성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의 확충 등을, 범죄피해자의 생계보장 및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 대응주체별 실천원리

#### (1) 법적 의무 소지 여부에 따른 실천원리

범죄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식적 대응의 원리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보충적으로 일반 사인들이 행하는 비공식적 대응의 원리에 따라 미비점이 보완되고 있다.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대응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나 공무원이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사설단체나 민간인과 같이 공공성이 없는 기관 혹은 개인이 대응을 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공식적 대응이건 비공식적 대응이건 이러한 대응을 하는 주체들의 불찰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Kirchhoff, 2005: 56). 다만 공식적 대응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신변을 위협받는 피해자의 범죄신고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경찰관의 의무(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그 한 예이다.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상 의료인의 성범죄 발생사실



신고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공식대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는 일반 사인의 경우는 비공식적 대응에 속하기에 도의적, 윤리적 양심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 보호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것이다.

## (2) 초기대응과 후속대응 구분에 의한 실천원리

범죄피해자를 민간인이 발견하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긴급후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되고,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초동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초기대응의 원리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게 되는 민간인 전문가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자 대응태도가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언행은 2차 피해를 야기 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기대응이 이후의 후속대응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초동수사가 끝나고 나면 범죄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후속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수사기관이나 초동수사나 민간인의 초동조치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대응을 후속적 대응의 원리라고 한다.

## Ⅲ. 비유 속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통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반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의 정신이다.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중요한 계명 중의 하나이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일반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 이웃사랑의 기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가 파생된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는 어떠한 실천원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원리가 어떠한 피해자 보호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비유 속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주체로 이해되고 있는 ‘이웃’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선행적 검토

### (1) '이웃'의 정의

'이웃'의 사전적 정의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sup>12)</sup> 이 개념은 다분히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근거리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친밀감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개념이 이처럼 반드시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는 지역민이어야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서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도와 주어야 할 법적, 종교적 의무를 지닌 자가 있다면 이들 상호간에 이웃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출애굽기 22:25, 신명기 22:1-4, 23:24-25, 24:12-13),<sup>13)</sup> 설사 법적·종교적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애에 기초하여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서로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레위기 19:10, 신명기 10:19).<sup>14)</sup>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개념은 바로 후자의 이웃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는 이웃이라는 인간관계가 지리적 근접성·사회공동체의 동질성·법적 의무감 및 종교규율적 책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지간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웃의 유형

우리 주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범죄피해자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6.1.19).

13) 위 각주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대신에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는 이 두 용어를 상호 혼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형제와 이웃은 같은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는 자신의 동족만을 이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정중은 역, 1996: 140).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동일 민족에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상호간'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14) 레위기 19:10에서는 가난한 타국인을 위한 배려를, 신명기 10:19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다. 동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구약의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를 포함하여 노약자,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바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에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긴요한 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말미암아 인권이 침해된 자,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 자들로서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신속히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sup>15)</sup>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웃사랑을 성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레위기 19:18, 신명기 23:24-25, 24:12-13, 24:21, 마가복음 12:31). 둘째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법적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법률·의료·심리 전문가들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자산과 전문적 지식으로 피해자를 보다 용이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피해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조). 범죄피해를 당한 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무너진 자아상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친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주변인들이 인내해주고 심리적 지지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독교인이 아닌 자, 피해자 보호와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공직에 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피해자와 아무런 사회적 관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도의적·윤리적 양심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기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피해자의 이웃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비유 속 실천원리의 추출

### (1) 이웃 간 공감능력 강화의 원리

이웃사랑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공감능력은 이웃사

15)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에서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누구인지 '타인의 정체성'에 관해 주안점을 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과연 타인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주안점을 바꾸었다고 한다(Marshall, 2013: 252).

랑이라는 일반원리를 현실 속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천원리가 된다. 로먼 크르즈나릭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서는 편견(偏見, 정형화 된 틀에 매이는 것), 권위(權威, 명령이나 규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거리(距離, 공간적 거리로 인해 무관심해 하는 것), 부인(否認, 언짢은 상황에 대하여 못 본 체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김병화 역, 2013: 84-99).<sup>16)</sup>

그렇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의 ‘편견’과 ‘권위’와 ‘거리적 한계’, 그리고 의도적 무관심인 ‘부인’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심정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피해자]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피해자]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 당신[피해자를 접촉하는 사람들]의 행동지침으로 삼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느바(김병화 역, 2013: 13) 이는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원리가 되는 것이다.

## (2) 피해자 보호업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의무부과의 원리

누가복음 10:30-35절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 중의 하나가 범죄피해를 입게 되면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강병도, 2011: 신약 110)<sup>17)</sup>. 그들이 오늘날 국가공무원이 갖는 법적 지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16) 범죄통제 우선정책이라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틀에 매여 피해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편견), 다른 지시나 명령, 규율을 중시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권위), 자기와 거리가 먼 지역의 범죄피해 상황에 대하여 둔감해 지는 것(거리), 범죄피해 사실이 불쾌감을 불러 일으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부인) 등이 공감능력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 들이라고 할 수 있다.

17)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유대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인과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인조차도 유대인인 피해자를 돕는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를 피해갔다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참다운 이웃이란 지연과 혈연 등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맺어질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민족 구성원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피해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더라도<sup>18)</sup>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신앙인 차원의 종교적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보문번역위원회, 1996: 291-292).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적 의무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수행하기 어렵다. 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비난으로 그치기에는 피해자 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권,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 위기상황에 개입하여야 할 공식적 대응의 주체들에게 위기상황을 타파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실천원리를 정립하여야 한다.

### (3) 위기상황 개입시 우선순위 판단의 원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거리상으로 무려 27킬로미터이고 1,006미터 이상을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험한 길이다(존 맥아더, 2015: 1079). 이러한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진 채 죽도록 폭행당하여 버려진 장면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다가 목도한 상황이다.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공무수행을 앞세워 자신의 방관을 정당화했다면 이는 ‘상황의 부인(否認)을 통한 공감실패’의 경우라 할 것이다(김병화 역, 2014: 85, 90). 물론 그들이 여리고에서 처리할 공적 업무로 인해 분주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신 다수의 공동체 이익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 이익보호를 위한다고 하여도 한 개인이 가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헌법 제37조).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의 인간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에 필적하거나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강도

18) 사마리아 사람들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그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유대인에게 천시를 받아 왔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도 그러한 천대와 반목이 지속되었다(강병도, 2011: 신약 147-148).

만난 자가 당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급박한 공적 업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침해법익의 비교를 통해 중대하고 본질적인 법익의 우선 보호라는 원리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설사 공적 업무와 상관없이 지나가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에 접근하면 부정을 입게 되는 규례(레위기 21:1-3)가 있기에 그 규범을 준수하고자 피했다면 종교적 규율준수에의 집착을 의미하는 ‘권위(權威) 주장에 의한 공감실패’ 일수도 있다(김병화 역, 2014: 90, 98).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레위기 19:18)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다고 볼 때 율법의 준수보다는 죽어가는 생명의 구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규범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 어느 규범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도 응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인간존엄성 보장에 직결되는 본질적 규범이 그렇지 않는 규범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본질적 규범 우선적용의 원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4) 사인(私人)의 자발적 지원의 원리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의 첫 반응은 바로 피해자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범죄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누가복음 10:33)’ 쓰러진 자 앞으로 다가가는 마음, 곧 동정심에 기초한 ‘이웃사랑’은 피해자 보호의 핵심적인 일반원리이며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존엄 사상과 연결된다.

이처럼 비유 속 사마리아인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갖지 않은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함에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소유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소독을 한 다음 이를 싸맴으로써 지혈을 하고<sup>19)</sup>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근 주막으로 이송을 한 후 개인 입장을 아랑곳 하지 않고 상당 시간을 돌봐 주게 된다. 일반 사인이 자신이 가진

19) 이 당시 기름은 진통제의 용도로, 포도주는 상처를 청결히 하고 소독하는 용도로 종종 쓰였다고 한다(Morris, 1988: 206-210).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를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면 공공영역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게 되는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 피해자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수행한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두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데, 이는 환자를 여러 날 돌볼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Marshall, 2013: 250).<sup>20)</sup>

생각건대 국가나 공공기관 혼자만의 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많다.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협력과 지원이 매우 긴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기 개인의 자산을 범죄피해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개인 자산의 박애주의적 활용 원리’가 추출될 수 있다.

#### IV.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 1.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교육 강화

비록 비유이지만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런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도 정의(justice)와 자비(mercy)와 신실함(faithfulness)을 저버린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한 행위로서(이사야 29:13, 마태복음 15:8, 마태복음 23:23),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은 행동임을 보여준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공감능력이 있다. 이 공감능력은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웃사랑’에 뿌리를 두고

20)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데나리온으로 12일분의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Morris, 1988: 206-210), BC 27년 이전의 로마제국 초기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비숙련 노동자나 일반 병사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Denarius>. 검색일 2016.2.5).

있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성’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재물을 강탈당하며 폭행당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깃뻛힌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파괴된 인간존엄의 현실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하는 열정이 담겨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일반원리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 단체에 소속되어 피해자를 돕게 되는 비공식적 민간인 전문가, 심지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이른바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감교육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공감능력에 대한 교육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핵적 일반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지도육을 의미한다.<sup>21)</sup>

##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의 적정화

비유 속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 가에 누워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자마자 응급구조 조치를 취한다.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지혈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막으로 이송하여 안정을 취하게 하고 후속적 의료조치를 취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는 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침해된 권익의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피해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이후 후속대응이 아무리 잘 되어도 피해회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사관이건 민간 전문가건 초기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민첩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응대하여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 신속히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응급구조의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sup>22)</sup> 피해자 보호에 법적

21) 공감능력은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고 그 인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죄악의 굴레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자리해야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고 볼 때(창세기 1:27-31; 요한복음 3:16),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한 인지도육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22) 범죄피해자를 돕거나 지원을 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 없는 자가 위난에 처해 있는 범죄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일반 시민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응급구조 행위를 하도록 기대하기가 현



의무가 부여 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응급구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대화관리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

공식적 대응주체들에 의한 초기대응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정책들의 예를 든다면, 피해자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위험측정 도구의 개발, 피해신고가 중첩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의 판단기준 설정, 피해자 보호규범 간 상호 충돌이 있을 때 적용해야 할 복수의 법령 간 우선순위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규범 간에 상호 충돌이 일어 날 때에는 그 법령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본질적인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지, 인간생존에 필요한 중차대한 법익인지 아니면 부차적인 법익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간존엄성 보장에 직결되는 본질적 법익과 인간생존에 불가결한 중대 법익을 담고 있는 규정을 여타 법익보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원리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보장규정이 다른 여타 피해자 보호정책들과 관계 법령의 집행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a good Samaritan laws)”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 법은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자발적 의사로 도왔던 자가 일이 잘못되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두려워 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꺼리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호조치 의무 있는 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법적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https://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 검색일 2016.7.7.).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발적인 구호행위자를 보호·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으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9호)”,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14071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46호)”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보상과 지원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 6월 24일 박성중 국회의원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이라도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검색일 2016.7.7.).

###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현실화

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을 갖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범죄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소지한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하는 한편, 자신의 개인 일정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봄으로써 자신이 계획했던 다른 여행의 기회가 상실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테나리온이라는 의료 및 간호비용을 미리 피해자 대신 지불해 주는 등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국가예산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는 민간인의 후원금도 기금형성의 주요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도출해 낸 ‘개인적 자산의 박애주의적 활용의 원리’의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인의 자발적인 물질적 지원이 있기 전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인간생존의 기초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더욱 확충해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용, 소송진행을 위한 법률비용, 환자 이송 및 사건처리 등을 위한 교통비용, 피해자의 임금손실에 따른 비용, 전문가 상담비용 등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제적 지원이 없었을 때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범죄로 인해 기초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4조),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금 및 지원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체포된 범죄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피해자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벽차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기에 국가가 범죄자의 손해배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후에 국가가 범죄자를 상대로 구상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피해자 생존에 불가결한 물질적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핵심적 일반원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 나오는 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피하여 지나갔던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대에 유력한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 그들을 등장시키셨을까? 그것은 인습적 신앙에 갇히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과 규례의 참 본질, 곧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sup>23)</sup> 그 율법과 규례의 본질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기독교에서 표방하는 이웃사랑의 법률적 표현은 바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보장, 그리고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실천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핵적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존엄성 보장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피해자에 대한 친절한 대응태도,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위기에 처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조치, 필요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확립과 같은 피해자 보호정책이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 등은 모두 위의 이웃사랑과 인간존엄성 보장 이념에 수렴된다.

그러므로 비유 속의 강도만난 자가 설사 적대적인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범죄피해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제사장은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규율을 넘어서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규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일반원리를 먼저 붙드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일의 실재를 구성한다(Marshall, 2013: 251).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고, 상대방도 나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이며,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자이다. 위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

23) 리차드 아스머(Osmer, R.R.)와 프리드리히 슈바이처(Schweitzer, F.L.)는 기독교인들이 공적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탈인습적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앙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타인을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합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평등적 자아(equal self)’, 개방된 의사소통의 공간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개방적 자아(open self)’를 가진 자라고 말한다 (Osmer, R.R. and Schweitzer, F.L.,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2006: 251-253).

용해 돌봐주는 모습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귀히 보고 그 존엄한 인격이 온전하게 보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강도 피해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성껏 약자를 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의 정신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핵심적 일반원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경 속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원리와 그에 기초한 다양한 실천원리들을 추출해 보았고 이러한 실천원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생산될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앞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에 기초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천원리들이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정책의 개발에 활발하게 적용된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병도 (2011). 『툼슨 II 주석 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 보문번역위원회 역 (1996). 『스펠전 설교전집』. 대구: 보문출판사.
- 성낙인 (2015).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정재길 외 (2010). 『법과 생활』. 서울: 도서출판 오래.
- 정중은 역 (1996). 『신구약 성경주석, 누가복음』. 서울: 크리스찬 서적.
- 존 맥아더 (2005). 『맥아더 성경 주석』. 서울: 아바서원.
- Groenhuijsen, M. (2014). *Slides of presentation in 14th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Mito. July 29th.
- Kirchhoff, G.F. (2005). *What is victimology?* Monograph Series No. 1.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 Krznaric, R. (2013).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김병화 역 (2014). 『공감하는 능력』. 서울: 더퀘스트.
- Marshall, C.D. (2013). *Compassion, Justice, and the Work of Restoration*. The Conrad Grebel Review 31(3).
- Morris, L. (1988). *Luke: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3., T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Osmer, R.R. and Schweitzer, F.L., (2003). *Developing a Public Faith: M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2006).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6.1.19)
- <https://en.wikipedia.org/wiki/Denarius>. (검색일 2016.2.5)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 (검색일 2016.2.12)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cooperation\\_in\\_criminal\\_matters/j10027\\_en.htm](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cooperation_in_criminal_matters/j10027_en.htm). (검색일 2016.6.15)
- [http://eur-lex.europa.eu/search.html?lang=en&text=Council+Frame-work+Decision+of+15+March+2001&qid=1466053001506&type=quick&AU\\_CODED=CONSIL&scope=EURLEX&DD\\_YEAR=2001](http://eur-lex.europa.eu/search.html?lang=en&text=Council+Frame-work+Decision+of+15+March+2001&qid=1466053001506&type=quick&AU_CODED=CONSIL&scope=EURLEX&DD_YEAR=2001). (검색일 2016.6.15)
- <http://eur-lex.europa.eu/search.html?qid=1466051805306&text=victims%20in%20criminal%20proceedings&scope=EURLEX&type=quick&lang=en>. (검색일 2016.6.15)
- [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http://ec.europa.eu/justice/consumer-marketing/files/crd_guidance_en.pdf). (검색일 2016.6.14)

58 『신앙과 학문』. 2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검색일 2016.7.7)

[https://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https://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 (검색일 2016.7.7)

## Abstract

# A Study on the Practical Principles of the Crime Victim Policies – Focusing on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 in the Gospel of Luke –

Jae-Min Kim (Kyungil University)

Since the mid 20<sup>th</sup> century,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general or practical principles for victim protection. However, the ways in which those principles are applied in victim protection are not sufficient nor effective for protecting victim rights. This is because people who enforce the relating law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ictim protection.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n the Gospel of Luke teaches the right way of responding to a man robbed on the street. In contrast to the Priest and the Levite who put the victim into a life-threatening situation by neglecting him, the Samaritan responded as he thinks fit to the condition of the victim and rescued him.

The parable teaches that the spirit of loving neighbor is the very essenc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This very spirit is exactly expressed in legal terms in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 legal terms expressed in the Article 10 understood this way secures human dignity as an important general principle. This author believes that various practical principles and suggestions can be drawn from that principle for improving the victim protection policies.

Key Words: crime victim, general principle, practical principle, neighborliness, victim protection policy

